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43회 임시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20. 9. 8. (화)

검 토 안 건	발 의
“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”	구청장



**복지도시위원회**

(전문위원 조광현)

# 검 토 보 고 서

(보고자 : 전문위원 조광현)

## 1. 검토안건

- 안건명 :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## 2. 제출경위
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- 제출일 : 2020. 8. 25
- 회부일 : 2020. 8. 26 (의안번호 : 20-101)

## 3. 제출이유

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4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사무명

- (가칭)용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
- (가칭)아현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
- (가칭)공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

## 나. 민간위탁 내용

1) 위탁기간 : 5년

2) 위탁시설 현황

구 분	위 탁 대 상 시 설		
시설명 (가칭)	용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	아현동 우리동네키움센터	공덕동 우리동네키움센터
소재지	대흥로4길 13(용강동), 2층 (용강동 494-95)	백범로31길 8(공덕동), 3층 (공덕동 257-3)	만리재로 96(공덕동), 2층3층 (공덕동 108-57)
규모	113.56㎡	243,67㎡	307㎡
정원 (예정)	24명	40명	50명
위치도			

3) 위탁사무 범위 :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 
관한 사무

4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5) 수탁기관 선정주체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별도구성)

다. 소요예산

○ (가칭)용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

〈단위:천원〉

연도별	사업비용	세부내역	비고
총사업비	844,614	국비 95,875, 시비 706,739, 구비 42,000	
2020년	12,466	- 인건비 : 10,916 (센터장1, 돌봄교사 2) - 운영비 : 1,550	2020.12.개소 (1개월분)
2021년	160,623	- 인건비 : 142,023, 운영비 : 18,600	
2022년	164,884	- 인건비 : 146,284, 운영비 : 18,600	
2023년	169,272	- 인건비 : 150,672, 운영비 : 18,600	
2024년	173,792	- 인건비 : 155,192, 운영비 : 18,600	
2025년	163,577	- 인건비 : 146,527, 운영비 : 17,050	2025.11.까지 (11개월분)

○ (가칭)아현동 우리동네키움센터

〈단위:천원〉

연도별	사업비용	세부내역	비고
총사업비	850,789	국비 96,618, 시비 712,171, 구비 42,000	
2021년	133,852	- 인건비 : 118,352 (센터장1, 돌봄교사 2) - 운영비 : 15,500	2021.3.개소 (10개월분)
2022년	164,884	- 인건비 : 146,284, 운영비 : 18,600	
2023년	169,272	- 인건비 : 150,672, 운영비 : 18,600	
2024년	173,792	- 인건비 : 155,192, 운영비 : 18,600	
2025년	178,448	- 인건비 : 159,848, 운영비 : 18,600	
2026년	30,541	- 인건비 : 27,441, 운영비 : 3,100	2026.2.까지 (2개월분)

○ (가칭)공덕동 우리동네키움센터

〈단위:천원〉

연도별	사업비용	세부내역	비고
총사업비	1,909,134	시비 1,597,634 구비 311,500	
2021년	304,703	- 인건비 : 200,870 (센터장1, 부센터장1, 돌봄교사 2.5, 조리사0.5) - 운영비 : 28,000, 급식비 : 75,833	2021.3.개소 (10개월분)
2022년	372,875	- 인건비 : 248,275, 운영비 : 33,600, 급식비 : 91,000	
2023년	380,324	- 인건비 : 255,724, 운영비 : 33,600, 급식비 : 91,000	
2024년	387,995	- 인건비 : 263,395 운영비 : 33,600, 급식비 : 91,000	
2025년	395,897	- 인건비 : 271,297, 운영비 : 33,600, 급식비 : 91,000	
2026년	67,340	- 인건비 : 46,573, 운영비 : 5,600, 급식비 : 15,167	2026.2.까지 (2개월분)

- 산출근거 : 2020년 「우리동네키움센터」 설치·운영 계획  
[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-2035 (2020.2.10.)]

#### 라. 세부추진일정

-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공개모집 공고 : 2020.9.~10.
- 선정심사 및 위탁운영 계약 체결 : 2020.11.~12.
- 리모델링 설계·공사 등 환경조성 추진 : 2020.8.~2021.3.
-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 (예정) : 2020.12.~2021.3.

### 5. 관계법령

- 가.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
- 나.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마.

### 6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내 설치하는 초등학생 대상 돌봄 서비스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아동돌봄서비스 조직·인력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임.

- 위탁운영 시설은 용강동우리동네키움센터외 2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센터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, 위탁사무의 범위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과 맞춤형 돌봄 상담 등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이 되겠음.
  
- 다만, 2019년부터 4년에 걸쳐 총 14개소의 우리동네키움센터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바,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항 규정 목적에 맞게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센터 운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[관련법규]

### ○ 「지방자치법」

**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, 운영 및 관리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**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○ 「아동복지법」

**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**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[본조 신설 2019. 1. 15.]

### 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**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** ①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9.24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##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###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4. 5. 20., 2016. 2. 3., 2016. 5. 29., 2017. 10. 24.>

1. "사회복지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나. 「아동복지법」

다. 「노인복지법」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

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바. 「영유아보육법」

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

**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**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>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